

California Training Benefits(캘리포니아 훈련 수당)

California Training Benefits(CTB) 프로그램은 실업 수당 청구인들에게 실업 수당을 받으면서 Employment Development Department(EDD, 고용 개발부)에서 승인한 학교나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받고, 기술을 발전시키거나 새로운 직업에 대해 배울 기회를 제공합니다.

승인된 CTB 참여자는 EDD에서 승인한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동안 일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구직 활동을 해야 하며, 적합한 구직 기회를 수락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실업 수당 청구 요건에서 면제됩니다. 16주 차 정기 실업 수당 급여를 받기 전에 학교 또는 훈련 프로그램 참여에 관해 문의하는 실업 수당 청구인은 교육 연장 수당 주 수를 추가로 연장할 자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EDD는 교육 프로그램의 유형과 상관없이, CTB 참여 자격을 결정하기 전에 실업 수당 청구인이 해당 교육 제공 기관에 등록하고 출석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적격 훈련 프로그램

정부에서 조직한 훈련 프로그램 또는 지원을 받는 특정한 유형의 훈련에 참여하는 실업 수당 청구인은 CTB에 참여할 자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유형의 훈련 프로그램은 EDD가 청구인의 등록 및 출석을 확인하는 대로 승인됩니다.

정부에서 조직한 훈련 프로그램

- 연방 인력 혁신 및 기회 법(Federal Workforce Innovation and Opportunity Act.)
- 캘리포니아주 고용 훈련 패널(California Employment Training Panel)
- 연방 무역 조정 지원(Federal Trade Adjustment Assistance)
- 캘리포니아주 근로 기회 및 자녀에 대한 책임(California Work Opportunity and Responsibility to Kids)
- 캘리포니아주 적격 훈련 제공 기관 목록(California's Eligible Training Provider List)에 있는 프로그램 및 제공 기관
- K-12 수학, 과학 또는 특수 교육 부문 단일 과목 교육 자격 증명 프로그램으로 캘리포니아주 교육 자격 인증위원회(California Commission on Teaching Credentialing)에서 승인한 프로그램

지원받는 훈련 프로그램

- 업계 관련 훈련 부문의 조합 또는 상업 조합의 현재 회원
- 고용주 또는 고용주 협회가 후원하는 훈련
- 주 또는 연방에서 승인한 수습 훈련

독자적으로 준비한 훈련

- 실업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고 훈련 참여를 본인이 준비한 청구인의 경우, 독자적으로 준비한 훈련과 관련하여 다음을 포함한 모든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CTB에 참여할 자격이 있습니다.
- 해당 훈련 프로그램이 고용 기회 또는 지역의 노동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제공함
 - 해당 훈련 프로그램이 전일제로 진행됨(일반적으로 주당 20시간 이상 또는 12학기 또는 분기로 구성됨)
 - 해당 프로그램 제공 기관이 미국 교육부 또는 캘리포니아주 사립 중등 교육 부서(California Bureau for Private Postsecondary Education)로부터 완전하게 인가를 받음
 - 해당 훈련 프로그램을 적절한 기간 안에 완료할 수 있음(일반적으로 2년 이내)
 - 청구에 대해 지급될 수 있는 최대 실업 수당이 전체 훈련 프로그램 기간을 지원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라도, 해당 훈련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음

훈련 연장 자격

훈련 연장을 청구할 자격이 되려면, 참여자는 모든 CTB 자격 기준을 충족하고 16주 차 정기 실업 수당을 받기 전에 학교 또는 훈련 참여에 대해 문의해야 합니다. 훈련 연장 수당은 참여자가 승인된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 연장 수당은 청구인의 다른 모든 실업 수당을 제하고 총 52주간의 최대 수당까지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훈련 연장은 각 실업 수당 청구당 한 번만 허용됩니다. 훈련 연장 수당은 3주가 넘는 여름 휴가 기간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수업료, 도서비 및 수수료

EDD는 수업료, 수수료, 도서비, 물품비 또는 교통비와 같은 학교 또는 훈련 관련 비용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참여자는 훈련을 지원하는 다른 주, 연방 또는 고용주 프로그램에 이러한 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제공되는 재정 지원 프로그램의 유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www.studentaid.ed.gov 를 방문하십시오.

추가 정보

CTB 프로그램에 참여할 법적 자격에 대한 설명은 캘리포니아 실업 보험 규정(California Unemployment Insurance Code)의 제1.5조에 나와 있습니다. CTB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www.edd.ca.gov/CTB에서 알아보십시오.

EDD는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고용주/프로그램입니다. 장애가 있는 사용자의 요청 시 보조 지원 및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지원사항 및/또는 대체 형식을 요청하시려면 1-866-490-8879번(음성)으로 전화하십시오. TTY 사용자는 캘리포니아 중계 서비스에 711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